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13
----------	-------

발의연월일 : 2026. 9. 29.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이헌승
김은혜 · 최보운 · 박충권
윤한홍 · 유용원 · 김재섭
주호영 · 김 건 · 이달희
안철수 · 김장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한도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인력 유출 및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은 지역별 차등 없이 동일한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청년의 경우 7년)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감면기간 확대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3년”을 “5년”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7년”을 “9년”으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감면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감면한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 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u>3년</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u>5년</u>]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 ----- ----- ----- ----- ----- ----- ----- ----- ----- <u>2031년 12월 31일</u> ----- ----- ----- <u>5년</u> ----- ----- ----- <u>7년</u> ----- ----- -----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
 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
 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
 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
 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
 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
 초 취업일부
 터 계산한다.

② ~ ⑨ (생략)

7년 9년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
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